Dictionary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특허권존속기간연장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허법이 아닌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받아야하며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활성, 안전성 등의 시험이 필요한 경우 특허법은 해당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권 존속기간 대상발명은 특허법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약사법에 의한 품목허가와 농약관리법에 의한 품목의등록2가지의 경우다.

특허권 족속기간

특허등록이허여된발명에대해출원일로부터20년

특허관리인

임의대리인의 일종이나 법률에 의해 강제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한 창작에 대해 국가에서 허여한 독점배타권으로 실용신안이 소발명에 허여되는 것이라면 특허는 고도한 발명 즉, 대발명에 대해 허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발명은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여부가 결정되는데 등록이 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특허발명이특허로써등록되기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구비하고 있어야한다.

트레이드 드레스

보통 상품이나 포장의 외관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논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품전체의 시각적인 이미지(visual image)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인상이라고 하고 있으며(Two pesos, Inc,v. Taco cabana, inc., 505 U.S. 764,764 n.1(1992), 상표법전문가인 맥카시(J. Thomas McCarthy) 교수는상품이나 서비스가 포장되고 제고되는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대상은 상품의 모양이나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이다. 전통적으로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레이블이나 포장지 그리고 용기만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과 포장의 전체적인 외관과 심지어 상품자체의 디자인과 모양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하는 주된 법률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는아직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판결이나 법리가 발전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주판례법이나 연방상표법(Lanhan Act) 제43(a),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요건, 보호대상을 명확히하고 비교적 체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